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979호 2017. 7. 28. (금)



시화-철쭉



시조-갈매기



시목-노티나무

훈 령

- 삼척시 훈령 제273호 삼척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----- 2

고 시

- 삼척시 고시 제86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----- 4
- 삼척시 고시 제88호 삼척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----- 5
- 삼척시 고시 제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----- 8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1, FAX : 570-3132)

삼척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7년 7월 일

삼척시장

삼척시 훈령 제273호

삼척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척시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삼척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자문단(이하 "자문단"이라 한다.)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삼척시의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
2. 시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
3. 그 밖에 시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

제3조(구성 등) ① 자문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분야의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② 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자문단은 전체회의와 개별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② 회의는 시장(부시장)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 다만, 개별회의는 시장(부시장)의 명을 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삼척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」 및 「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삼척시 고시 제2017-86호

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·해제)에 따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0일

삼척시장

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

1. 지정사유 : 멸종위기식물 2급 보호종인 복주머니난 군락지 보존
2. 산림 소재지 :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 126번지
3. 구역면적 : 34,513m²
4. 입산통제기간 : 2017. 8. 20. ~ 2020. 6. 30.
5. 지정연월일 : 2017. 7. 20.

삼척시고시 제2017-88호

삼척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401번지 일원에 「산지관리법」 상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“국토계획법”）」 제6조 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 조례(이하 “위임조례”）」 제2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고시하고,
2. 「국토계획법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28일

삼척시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: 「산지관리법」 상 보전산지(공익용산지) 지정 고시(산림청고시 제65호, 2017. 7.17.)에 따른 용도지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

나. 위 치: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401번지 일원

다. 면 적: 16,379㎡(보전·생산관리지역 → 농림지역)
-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적용

라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비 고	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총 계	1,192,521,712.1	-	1,192,521,712.1		
계	80,176,759.1	-	80,176,759.1		
도 시 지 역	주거 지역	소 계	10,120,281.1	-	10,120,281.1
		제1종일반주거지역	1,678,083.4	-	1,678,083.4
		제2종일반주거지역	7,770,843.2	-	7,770,843.2
		제3종일반주거지역	381,996.0	-	381,996.0
	준주거지역	289,358.5	-	289,358.5	
	상업 지역	소 계	1,026,210.0	-	1,026,210.0
		일반상업지역	1,026,210.0	-	1,026,210.0
	공업 지역	소 계	7,159,813.8	-	7,159,813.8
		전용공업지역	1,161,400.0	-	1,161,400.0
		일반공업지역	4,951,592.8	-	4,951,592.8
		준공업지역	1,046,821.0	-	1,046,821.0
	녹지 지역	소 계	56,952,192.2	-	56,952,192.2
		보전녹지지역	3,910,619.0	-	3,910,619.0
생산녹지지역		1,084,500.0	-	1,084,500.0	
자연녹지지역	51,957,073.2	-	51,957,073.2		
미 지 정	4,918,262.0	-	4,918,262.0		
계	1,112,344,953.0	-	1,112,344,953.0		
비 도 시 지 역	관리 지역	소 계	166,388,307.0	감) 16,379	166,371,928.0
		관리지역(미세분)	76,658.0	-	76,658.0
		보전관리지역	35,888,747.0	감) 201	35,888,546.0
		생산관리지역	44,119,231.0	감) 16,178	44,103,053.0
	계획관리지역	86,303,671.0	-	86,303,671.0	
	농 립 지 역	927,781,743.0	증) 16,379	927,798,122.0	
자연환경보전지역	18,174,903.0	-	18,174,903.0		

※ 미지정은 해면에 환한다.

■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m ²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401번지 일원	보전 · 생산 관리 지역	농림 지역	16,379	8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전산지 지정 고시(용도지역 구분 없음) 지역에 대한 농림지역 지정 - 「국토계획법」 제6조 및 제42조 제2항 경미한 사항 변경 -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25조 제3항 제5호

마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

: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LURIS, <http://luris.molit.go.kr>) 및 삼척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samcheok.go.kr>) 게재

: 삼척시청(별관 1층) 도시과 내 열람 가능

바. 기타 고시 관련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(☎ 033-570-3876~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삼척시 고시 제2017 - 89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,제24조,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7. 07. 28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02 (등봉동) 외3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07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	
1	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218	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02 (등봉동)	20170728	건물신축	20090807	지역적 특성 반영	
2	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302-4	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28 (등봉동)	20170728	건물신축	20090807	지역적 특성 반영	
3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관문리 99-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관문길 508	20170728	건물신축	20090807	지역명칭 반영 (관문리)	
4	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90(갈천동)	폐지	20170728	건물말소	20110729	동해지역해안도로(기존도로명)	
5		이	하	여	백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
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내역

구분	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고시일	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		개	4 건					
부여	1	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218	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02 (등봉동)	20170728	건물신축	2009-08-07	지역적 특성 반영		
부여	2	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302-4	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4528 (등봉동)	20170728	건물신축	2009-08-07	지역적 특성 반영		
부여	3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관문리 99-1	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관문길 508	20170728	건물신축	2009-08-07	지역명칭 반영 (관문리)		
폐지	4	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90(갈천동)	폐지	20170728	건물말소	2011-07-29	동해지역해안도로(기존도로명)		